

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.)로 수립·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75호(2010.3.4.)로 정비구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33호(2019.1.3.), 마포구고시 제2022-90호(2022.4.28.), 마포구고시 제2022-245호(2022.12.29.), 마포구고시 제2023-55호(2023.3.30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2조 제1항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또한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7조 제1항 각 호 사항 중 의제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024년 6월 20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-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공덕동 119번지 일대 (11,301.4㎡)
-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6, 2층)
 - 조합장 유철선
-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0개월
- 사업시행인가일 : 2024. 6. 20.
-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
나.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

연번	관리 청별	소재지	지목	저촉 국공유지 면적			무상양도 면적(㎡)	비고
				공부상(㎡)	구역편입(㎡)	정비기반 시설편입(㎡)		
총 계					1,922.40	436.00	436.00	
1	국토교통부	공덕동 119-3	도로	129.00	129.00	-	-	
2	국토교통부	공덕동 120-18	도로	284.00	284.00	-	-	
국토교통부 소계					413.00	-	-	
3	기획재정부	공덕동 119-21	대	3.00	3.00	-	-	
4	기획재정부	공덕동 120-1	대	11.00	11.00	-	-	
5	기획재정부	공덕동 120-25	도로	7.00	7.00	-	-	
기획재정부 소계					21.00	-	-	
6	마포구	공덕동 118-8	대	13.00	13.00	13.00	13.00	
7	마포구	공덕동 119-41	도로	3,686.00	1,049.00	261.00	261.00	
8	마포구	공덕동 460-3	대	264.40	264.40	-	-	
9	마포구	공덕동 460-4	도로	162.00	162.00	162.00	162.00	
마포구 소계					1,488.40	436.00	436.00	

10. 기타 관계도서 : 마포구청 주택상생과에 비치.(☎02-3153-9333) 끝.